

●고용노동부령 제204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7년 12월 27일

고용노동부장관 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요양급여의 신청 등)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(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공단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요양급여의 신청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(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제69조의 제목 “(기금관리 보조요원)”을 “(기금관리요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제91조제2항”을 “제91조제1항”으로, “기금관리 보조요원”을 “기금관리요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 대상 중 이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구로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도 이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 첨부 서류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고용노동부 제공>

고 시

●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-14호

「방송법」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항에 따른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27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